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세버스 신규등록 제한 등 수급조절 시행 고시 알림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2호(2020.12.1.) 관련입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차량 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는 전세버스 수급계획이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 및 전국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제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운송사업용 차량
 - 나. 제한기간: 시행일로부터 2년간('20.12.1. ~ '22.11.30., 기간 연장)
 - 다. 시행일: 2020. 12. 1.
 - 라. 제한방법: 수급조절 대상사업인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신규 등록 및 전세버스 차량에 대한 신규 등록·증차가 포함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한

붙임: 전세버스 수급조절 시행 고시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강원도지사(교통과장), 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 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 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대전광역시장(운송주차과장), 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 울산광역시장(버스타็กซี่과장), 인천광역시장(택시화물과장), 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전라북도지사(도로교통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 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 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무관	최아진	서기관	대결 2020.12.1. 양찬윤	버스정책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593	(2020. 12. 1.)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829	팩스번호	044-201-5582	/ 1234nn@molit.go.kr / 대국민 공개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입니다.